

시공능력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국토연구원

은 지난 3월 11일 종회의실에서 건설교통부 도태호 건설경제담당관, 대한설비건설협회 김경희 상임이사, 카톨릭대학교 김명수 경제학과 교수,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노의래 상무, 현대건설(주) 영업본부 천길주 상무 등 건설관련업계 및 업체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공능력평가공시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현대건설을 비롯한 20여 개 건설사에서 현행 시공능력평가제도는 시공실적이나 기술수준을 지나치게 저평가하는 반면 경영상태는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면서 합리적인 시공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주장하고,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특히 현대건설측은 저평가되고 있는 시공실적으로 인해 오히려 건설회사의 실제 공사 수행능력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경영상태 평가를 낮추고 건설산업에 맞게 시공실적과 기술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영상태 평가항목 비중이 지난 2000년 13%에서 최근 38%로 대폭 높아져 실제 시공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영상태 평가액 산정시 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삼다보니 실적이 미미해도 자본금만 크면 평가액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반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현재의 시공능력 평가제도는 국제기준에 맞는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제도라고 지적하며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강조하고서, 오히려 실적 평가비중을 높일 경우 왜곡된 경영평가로 인해 대외적인 신인도가 하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한설비건설협회 김경희 상임이사는 현행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실적평가는 3년간 연평균액의 60% 만을 인정하고 경영평가액 부분은 무한대로 평가하다 보니, 설비건설업계는 제조와 건설업을 겸업하는 업체여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일례로 A란 업체는 연평균 공사금액이 2억4천만원 정도이나, 경영평가액이 180억원으로 평가되어 시공능력

평가액이 190억이나 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경영평가액이 연평균 실적의 500% 이상 업체가 130개사가 되고, 최고 실적의 70배나 되는 업체도 발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경영평가액이 실적의 1000%가 넘는 업체가 57개사가 있으나, 이중 연평균 실적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 되어,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업체가 22개사가 된가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공능력평가제도를 개선하여 실적평가부분은 100% 인정되고, 경영평가부분은 합리적으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건설교통부 도태호 건설경제담당관은 시공능력평가제도는 일반건설업계 1,200개사, 전문건설업체 3만2천개사, 설비건설업계 5천개사에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현행 제도를 급격하게 바꾸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며, 이는 점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경영평가부분이 무한대로 평가되어 시공능력평가가 왜곡되는 현상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시공능력평가제도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업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면 개편될 때 기존의 도급한도액제도가 폐지됨으로써 도입된 제도이다.

가)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방법

산식 : 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 실적평가액 :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60%

○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의 100%

- 실질자본금 = 총자산 - 총부채

※ 단, 건설업 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는 건설업 부분의 비율만 인정)

- 경영평점 = (유동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율평점 + 총자본회전율평점) ÷ 4

○ 기술능력평가액 : (보유기술자 × 1인당 생산액)의 20%

※ 단, 실질자본금의 2배 또는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30%를 초과하지 못함.

- 2003년도 1인당 생산액 = 3억5천만원

○ 신인도평가액 : ISO, 영위기간 등

※ 단,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25%를 초과하지 못함

나) 시공능력평가의 활용

○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

○ 제한경쟁입찰에 있어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참가자를 제한(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 일반건설업체의 유자격자 명부 작성(군 편성)의 기준이 됨.